『연제갤러리자이』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33-575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0.27.)로부터 6개월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0.08.(목)	2026.11.18.(수)	2026.11.23.(월)	2026.11.26.(목)	2026.11.28.(토)~ 2026.12.01.(화)	2026.12.03.(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8.(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95**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08.(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469**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11.23.(월)	2026.11.26.(목)	2026.11.28.(토)~2026.12.01.(화)	2026.12.03.(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11)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연제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10.27.)**로부터 **6개월간**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3층 3개동 총 499세대(일반분양459세대/부산시 기부채납40세대) 중 잔여 315세대**

■ **입주시기** : **2030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295	01	084.9587A	84A	53	101	502, 503, 504, 602, 603, 604, 702, 703, 704, 802, 803, 903, 1002, 1004, 1103, 1104, 1202, 1203, 1204, 1303, 1304, 1402, 1404, 1503, 1504, 1602, 1603, 1604, 1702, 1802, 1803, 1804, 1903, 1904, 2203, 2204, 2302, 2303, 2402, 2403, 2502, 2504, 2604, 2702, 2703, 2704, 2803, 2904, 3004, 3303, 3404, 3604, 3903
	02	084.9052B	84B	81	102	402, 403, 502, 503, 602, 603, 703, 802, 803, 902, 1002, 1003, 1102, 1103, 1202, 1203, 1303, 1402, 1502, 1603, 1702, 1703, 2002, 2003, 2102, 2202, 2203, 2303, 2402, 2403, 2503, 2602, 2703, 2802, 3003, 3102, 3202, 3203, 3302, 3402, 3502, 3602, 3603, 3702, 3703, 3802, 3803, 3903, 4002, 4003, 4102, 4103, 4202, 4203
					103	402, 502, 602, 802, 902, 1002, 1102, 1202, 1302, 1402, 1502, 1602, 2202, 2302, 2502, 2602, 2702,

						2802, 3102, 3302, 3402, 3502, 3702, 3802, 4002, 4102, 4202
	03	084.8780C	84C	26	103	303, 403, 503, 603, 703, 803, 1103, 1203, 1303, 1403, 1503, 1603, 1703, 1803, 2203, 2303, 2403, 2503, 2703, 2903, 3003, 3103, 3203, 3603, 3903, 4103
	04	084.7933D	84D	155	101	401, 405, 501, 505, 601, 605, 701, 705, 801, 805, 901, 905, 1001, 1005, 1101, 1201, 1205, 1305, 1401, 1501, 1601, 1605, 1701, 1705, 1801, 1901, 1905, 2101, 2105, 2205, 2305, 2401, 2405, 2505, 2601, 2705, 2801, 2805, 3005, 3101, 3201, 3205, 3305, 3401, 3405, 3601, 3605, 3901, 3905, 4005, 4105, 4201, 4205, 4301, 4305
					102	301, 304, 401, 404, 504, 701, 801, 901, 904, 1001, 1104, 1204, 1301, 1401, 1501, 1504, 1601, 1701, 1704, 1904, 2101, 2104, 2201, 2404, 2501, 2504, 2601, 2701, 2704, 2801, 2804, 3101, 3104, 3204, 3301, 3304, 3401, 3501, 3504, 3604, 3704, 3801, 3804, 3901, 3904, 4001, 4104, 4201
					103	301, 304, 401, 404, 501, 601, 604, 701, 704, 801, 804, 901, 904, 1101, 1104, 1201, 1204, 1301, 1304, 1404, 1504, 1601, 1701, 1704, 1801, 1904, 2101, 2204, 2304, 2401, 2501, 2504, 2601, 2701, 2801, 2901, 3101, 3104, 3204, 3304, 3401, 3404, 3601, 3604, 3701, 3704, 3801, 3804, 3901, 3904, 4104, 4201
	합 계			315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동호 구분	층 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후 30일이내	'27.06.15	'28.01.14	'28.08.14	'29.04.13	'29.09.14	'30.02.15	
84.9587A	84A	53	101동 2호,4호	5층	2	288,150,240	514,049,760	802,200,000	10,000,000	30,110,000	80,220,000	80,220,000	80,220,000	80,220,000	80,220,000	80,220,000	280,770,000
				6~10층	7	291,311,200	519,688,800	811,000,000	10,000,000	30,550,000	81,100,000	81,100,000	81,100,000	81,100,000	81,100,000	81,100,000	283,850,000

			101동 3호	5층	1	282,403,040	503,796,960	786,200,000	10,000,000	29,310,000	78,620,000	78,620,000	78,620,000	78,620,000	78,620,000	78,620,000	275,170,000
				6~10층	4	285,456,240	509,243,760	794,700,000	10,000,000	29,735,000	79,470,000	79,470,000	79,470,000	79,470,000	79,470,000	79,470,000	278,145,000
			101동 2호,3호,4호	11~15층	11	294,436,240	525,263,760	819,700,000	10,000,000	30,985,000	81,970,000	81,970,000	81,970,000	81,970,000	81,970,000	81,970,000	286,895,000
				16~20층	9	300,686,320	536,413,680	837,100,000	10,000,000	31,855,000	83,710,000	83,710,000	83,710,000	83,710,000	83,710,000	83,710,000	292,985,000
				21~25층	8	306,972,320	547,627,680	854,600,000	10,000,000	32,730,000	85,460,000	85,460,000	85,460,000	85,460,000	85,460,000	85,460,000	299,110,000
				26~30층	7	313,222,400	558,777,600	872,000,000	10,000,000	33,6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305,200,000
				31~35층	2	316,347,440	564,352,560	880,700,000	10,000,000	34,035,000	88,070,000	88,070,000	88,070,000	88,070,000	88,070,000	88,070,000	308,245,000
				36~40층	2	319,472,480	569,927,520	889,400,000	10,000,000	34,47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88,940,000	311,290,000
84.9052B	84B	81	102동 2호	4층	1	273,387,120	487,712,880	761,100,000	10,000,000	28,055,000	76,110,000	76,110,000	76,110,000	76,110,000	76,110,000	76,110,000	266,385,000
				5층	1	276,404,400	493,095,600	769,500,000	10,000,000	28,475,000	76,950,000	76,950,000	76,950,000	76,950,000	76,950,000	76,950,000	269,325,000
				6~10층	4	279,385,760	498,414,240	777,800,000	10,000,000	28,890,000	77,780,000	77,780,000	77,780,000	77,780,000	77,780,000	77,780,000	272,230,000
			102동 3호 103동 2호	4층	2	277,553,840	495,146,160	772,700,000	10,000,000	28,635,000	77,270,000	77,270,000	77,270,000	77,270,000	77,270,000	77,270,000	270,445,000
				5층	2	280,607,040	500,592,960	781,200,000	10,000,000	29,06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273,420,000
				6~10층	8	283,660,240	506,039,760	789,700,000	10,000,000	29,485,000	78,970,000	78,970,000	78,970,000	78,970,000	78,970,000	78,970,000	276,395,000
			102동 2호, 3호 103동 2호	11~15층	12	286,713,440	511,486,560	798,200,000	10,000,000	29,910,000	79,820,000	79,820,000	79,820,000	79,820,000	79,820,000	79,820,000	279,370,000
				16~20층	6	292,783,920	522,316,080	815,100,000	10,000,000	30,755,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285,285,000
				21~25층	10	298,890,320	533,209,680	832,100,000	10,000,000	31,605,000	83,210,000	83,210,000	83,210,000	83,210,000	83,210,000	83,210,000	291,235,000
				26~30층	7	304,996,720	544,103,280	849,100,000	10,000,000	32,455,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297,185,000
				31~35층	10	308,049,920	549,550,080	857,600,000	10,000,000	32,880,000	85,760,000	85,760,000	85,760,000	85,760,000	85,760,000	85,760,000	300,160,000
				36~40층	12	311,103,120	554,996,880	866,100,000	10,000,000	33,305,000	86,610,000	86,610,000	86,610,000	86,610,000	86,610,000	86,610,000	303,135,000
				41~42층	6	320,262,720	571,337,280	891,600,000	10,000,000	34,580,000	89,160,000	89,160,000	89,160,000	89,160,000	89,160,000	89,160,000	312,060,000
84.8780C	84C	26	103동 3호	3층	1	277,841,200	495,658,800	773,500,000	10,000,000	28,675,000	77,350,000	77,350,000	77,350,000	77,350,000	77,350,000	77,350,000	270,725,000
				4층	1	280,930,320	501,169,680	782,100,000	10,000,000	29,105,000	78,210,000	78,210,000	78,210,000	78,210,000	78,210,000	78,210,000	273,735,000
				5층	1	284,019,440	506,680,560	790,700,000	10,000,000	29,535,000	79,070,000	79,070,000	79,070,000	79,070,000	79,070,000	79,070,000	276,745,000
				6~10층	3	287,108,560	512,191,440	799,300,000	10,000,000	29,965,000	79,930,000	79,930,000	79,930,000	79,930,000	79,930,000	79,930,000	279,755,000
				11~15층	5	290,197,680	517,702,320	807,900,000	10,000,000	30,395,000	80,790,000	80,790,000	80,790,000	80,790,000	80,790,000	80,790,000	282,765,000
				16~20층	3	296,375,920	528,724,080	825,100,000	10,000,000	31,255,000	82,510,000	82,510,000	82,510,000	82,510,000	82,510,000	82,510,000	288,785,000
				21~25층	4	302,554,160	539,745,840	842,300,000	10,000,000	32,115,000	84,230,000	84,230,000	84,230,000	84,230,000	84,230,000	84,230,000	294,805,000
				26~30층	3	308,732,400	550,767,600	859,500,000	10,000,000	32,975,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300,825,000
				31~35층	2	311,821,520	556,278,480	868,100,000	10,000,000	33,405,000	86,810,000	86,810,000	86,810,000	86,810,000	86,810,000	86,810,000	303,835,000
				36~40층	2	314,910,640	561,789,360	876,700,000	10,000,000	33,835,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306,845,000
				41~42층	1	324,178,000	578,322,000	902,500,000	10,000,000	35,125,000	90,250,000	90,250,000	90,250,000	90,250,000	90,250,000	90,250,000	315,875,000
84.7933D	84D	155	103동 4호	3층	1	277,158,720	494,441,280	771,600,000	10,000,000	28,580,000	77,160,000	77,160,000	77,160,000	77,160,000	77,160,000	77,160,000	270,060,000
			101동 1호 103동 4호	4층	2	280,211,920	499,888,080	780,100,000	10,000,000	29,005,000	78,010,000	78,010,000	78,010,000	78,010,000	78,010,000	78,010,000	273,035,000
			101동 1호	5층	1	283,301,040	505,398,960	788,700,000	10,000,000	29,435,000	78,870,000	78,870,000	78,870,000	78,870,000	78,870,000	78,870,000	276,045,000
			102동 1호,4호 103동 1호	3층	3	266,059,440	474,640,560	740,700,000	10,000,000	27,035,000	74,070,000	74,070,000	74,070,000	74,070,000	74,070,000	74,070,000	259,245,000
			101동 5호 102동 1호,4호 103동 1호	4층	4	269,004,880	479,895,120	748,900,000	10,000,000	27,445,000	74,890,000	74,890,000	74,890,000	74,890,000	74,890,000	74,890,000	262,115,000
			101동 5호, 102동 4호, 103동 1호	5층	3	271,986,240	485,213,760	757,200,000	10,000,000	27,860,000	75,720,000	75,720,000	75,720,000	75,720,000	75,720,000	75,720,000	265,020,000
			101동 5호 102동 1호,4호 103동 1호	6~10층	14	274,931,680	490,468,320	765,400,000	10,000,000	28,270,000	76,540,000	76,540,000	76,540,000	76,540,000	76,540,000	76,540,000	267,890,000
				11~15층	11	277,877,120	495,722,880	773,600,000	10,000,000	28,680,000	77,360,000	77,360,000	77,360,000	77,360,000	77,360,000	77,360,000	270,760,000
				16~20층	10	283,803,920	506,296,080	790,100,000	10,000,000	29,505,000	79,010,000	79,010,000	79,010,000	79,010,000	79,010,000	79,010,000	276,535,000
				21~25층	14	289,694,800	516,805,200	806,500,000	10,000,000	30,325,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282,275,000
				26~30층	12	295,621,600	527,378,400	823,000,000	10,000,000	31,15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288,050,000
				31~35층	13	298,567,040	532,632,960	831,200,000	10,000,000	31,560,000	83,120,000	83,120,000	83,120,000	83,120,000	83,120,000	83,120,000	290,920,000
				36~40층	14	301,548,400	537,951,600	839,500,000	10,000,000	31,975,000	83,950,000	83,950,000	83,950,000	83,950,000	83,950,000	83,950,000	293,825,000
				41~43층	6	310,420,640	553,779,360	864,200,000	10,000,000	33,210,000	86,420,000	86,420,000	86,420,000	86,420,000	86,420,000	86,420,000	302,470,000
			101동 1호 103동 4호	6~10층	9	286,390,160	510,909,840	797,300,000	10,000,000	29,865,000	79,730,000	79,730,000	79,730,000	79,730,000	79,730,000	79,730,000	279,055,000
				11~15층	9	289,479,280	516,420,720	805,900,000	10,000,000	30,295,000	80,590,000	80,590,000	80,590,000	80,590,000	80,590,000	80,590,000	282,065,000

				16~20층	6	295,621,600	527,378,400	823,000,000	10,000,000	31,15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82,300,000	288,050,000
				21~25층	5	301,799,840	538,400,160	840,200,000	10,000,000	32,01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294,070,000
				26~30층	2	307,942,160	549,357,840	857,300,000	10,000,000	32,865,000	85,730,000	85,730,000	85,730,000	85,730,000	85,730,000	85,730,000	300,055,000
				31~35층	7	311,031,280	554,868,720	865,900,000	10,000,000	33,295,000	86,590,000	86,590,000	86,590,000	86,590,000	86,590,000	86,590,000	303,065,000
				36~40층	6	314,084,480	560,315,520	874,400,000	10,000,000	33,720,000	87,440,000	87,440,000	87,440,000	87,440,000	87,440,000	87,440,000	306,040,000
				41~43층	3	323,351,840	576,848,160	900,200,000	10,000,000	35,010,000	90,020,000	90,020,000	90,020,000	90,020,000	90,020,000	90,020,000	315,070,000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26.(목) ~ 2026.12.05.(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1.26.(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 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본인과의 관계확인)

			(상세)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
		○	해외체류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위임장 및 계약 위임장]**
	○		신분증 및 도장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 비치된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당첨자 계약체결	2026.12.03.(목) 10:00 ~ 16:00 (1일간)	• '연제갤러리자이'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11	☎1833-5755

■ 유의사항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 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1차 계약금	하나은행	231-910060-72404	GS건설(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가상계좌로 납입된 분양대금은 모계좌[하나은행 231-910060-72404 예금주 : GS건설(주)]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501호 계약자 → '10105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①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7.06.15.)	입주시
84A	17,900,000	1,790,000	1,790,000	14,320,000
84B	21,100,000	2,110,000	2,110,000	16,880,000
84C	20,300,000	2,030,000	2,030,000	16,240,000
84D	21,700,000	2,170,000	2,170,000	17,360,000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는 '연제갤러리자이'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설치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연제갤러리자이'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나은행	231-910060-73104	GS건설(주)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가상계좌부여(중도금 및 잔금)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501호 계약자 → '10105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 및 가전옵션)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선택품목 세부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의 경우, 계약자를 대상으로 추후 별도 계약 일정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함)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인지세 납부 관련 세부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시 당첨자로 명단 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지에스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법인등록번호	**110111-0002694**	**110111-0002694**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xi.co.kr/yj)**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11**

■ **분양 문의 : 1833-5755**